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파견활동 국군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19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3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10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제명	12
나. 정의(안 제2조제1호)	13
다. 국군 해외파견의 국회 동의(안 제6조)	15
라. 개별 파견요원의 해외파견(안 제7조)	17
마. 파견기간의 연장(안 제9조)	20
바.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안 제10조)	22
사. 해외파견 활동의 종료 요구(안 제11조)	24
아. 불이익 처분의 금지(안 제13조)	26
※ 참고자료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7.
3. 회 부 일 : 2025. 7. 8.

II. 제안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인종·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증진이나 군사적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 파견활동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여 법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국군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에 파견된 국군이 헌법을 준수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및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해외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시 생략 가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파견여부를 결정함(안 제5조).
- 다.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6조).
- 라. 개별 파견요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회가 파견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조).
- 마. 정부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파견 활동 중인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정부는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하고 철수시켜야 함(안 제10조).
- 사. 정부는 매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현황과 계획 등을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조).
- 아. 정부는 파견된 국군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제정 필요성

- 헌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여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국군은 외국에의 파견이 가능함.
- 이러한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정부는 그동안 국제연합(UN)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다국적군 파견 및 국방교류협력 차원의 파견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UN PKO 파견으로 한빛부대(남수단), 동명부대(레바논),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으로 청해부대(소말리아), 아크부대(UAE) 등 4개 부대의 해외파견이 추진되고 있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국회에 각각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여 해외파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음.

[국군 해외파견 연혁]

구분	파견부대	기 간	활 동 (비고)
UN PKO 파견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공병)	'93.7.~'94.3.	- UN PKO 활동에 필요한 방호·전기시설·도로 등 건설 -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학교 및 기술학교 운영
	서부사하라 의료감시단	'94.8.~'06.5.	- UN PKO 요원 의료 및 위생 지원 - 지역주민 방역, 전염병 예방
	앙골라 공병대대	'95.10.~'96.12.	UN PKO 활동에 필요한 교량·건설 및 보수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99.10.~'03.10.	- 현지 치안확보 및 인도적 구호활동 지원(최초 보병부대) * 다국적군에 참여('99.10) 치안회복 후 유엔 2000년 2월 부터 PKO로 전환
	레바논 동명부대	'07.7.~현재	- 레바논과 이스라엘간 정전감시 - 인도적 지원(의료지원, 직업교육 등)
	아이티 단비부대	'10.2.~'12.12.	지진피해 복구 및 재건지원

	남수단 한빛부대	'13.3.~ 현재	- 남수단(종글레이주) 재건 지원 - 인도주의적 활동 및 친한화 활동
다국 적군 및 국방 교류 협력 파견	월남전 (비둘기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은마부대 태권도 교관단)	'64.9.~'73.3.	월남전 전투 및 전투근무지원(경비·공병·수송 등), 의료진 및 태권도 교관 지원
	걸프전 의료지원단	'91.1.~'91.4.	다국적군 의료지원
	걸프전 공군수송단	'91.2.~'91.4.	다국적군 항공운송 지원
	아프간 해성부대	'01.12.~'03.9.	대테러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병력·장비·물 자의 해상수송
	아프간 청마부대	'01.12.~'03.12.	대테러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병력·장비·물 자의 항공수송
	아프간 동의부대	'02.2.~'07.12.	동맹군/현지주민 의료지원
	아프간 다산부대	'03.3.~'04.4.	동맹군 기지운영 지원, 인도적 대민지원
	이라크 서희부대	'03.4.~'04.4.	동맹군 기지운영 지원, 인도적 대민지원
	이라크 제마부대	'03.4.~'04.4.	동맹군/현지주민 의료지원
	이라크 자이툰부대	'04.4.~'08.12.	- 책임지역의 평화정착 및 재건 지원 * 자이툰 병원 운영, 학교 및 도로건설 등 주민숙 원사업 해결
	이라크 다이만부대	'04.10.~'08.12.	이라크 지원을 위한 병력·장비·물자의 항공수 송
	소말리아 청해부대	'09.3.~현재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연합해군사 대해적 작전 동참
	아프간 오쉬노부대	'10.6.~'14.6.	한국 PRT(지방재건팀) 주둔지 및 활동 보호
	UAE 아크부대	'11.1.~현재	UAE군 교육훈련 및 연합훈련
	필리핀 아라우부대	'13.12.~'14.12.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지원 및 인도적 지원

□ 또한 위와 같은 부대단위 파견 이외에도 감시단, 임무단, 참모장교
및 협조장교 등 개인단위 파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군 개인단위 파견 현황]

구분	파견지역	파견 인원	담당업무	최초 파견시기
다국적군 파견	플로리다	2	미 중부사령부 협조단	2001.11.
	바레인	7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2008.1.
	지부티	1	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 기동부대 협조장교	2009.3.
	슈투트가르트	1	미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2015.7.
	아리프잔	2	쿠웨이트 다국적지원사령부	2019.12.

			협조장교	
	소말리아해역	1	EU소말리아 해군사령부 협조장교	2020.3.
	바그다드	2	다국적군지원사령부 참모장교	2022.8.
계		16		
PKO 파견	이슬라마바드 등	5	인·파 정전감시단	1994.11.
	나쿠라	4	레바논 평화유지군	2007.1.
	라운 등	3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2009.7.
	주바 등	9	남수단 임무단	2011.7.
	이스라엘	1	골란고원 임무단	2023.12.
계		22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헌법의 근거규정 외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어 임무수행의 기본원칙, 평화유지활동의 결정, 국회 동의안 세부내용, 파견 실시·연장·종료 및 국회에의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에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없이 국방부 훈령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해외파견과 같이 국군의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첫째, 국군의 해외파견은 국가의 안보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헌법은 이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의 결정 절차와 국회의 동의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려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취지에 부합하며 국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하겠음.

둘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국군의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에 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은 양 파견활동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의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할 것임. 또한 현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파견연장 동의안의 작성 부처는 외교부이고 동의안 심사 국회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서,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연장 동의안 작성·심사 부처(국방부) 및 상임위원회(국회 국방위원회)와 상이하므로 정부의 해외파견 수행 및 국회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임.

셋째, 제정안에서는 해외파견활동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군의 해외파견 결정시 사전검토 절차 마련·조사활동보고서 작성, 국회동의시 포함사항, 특정국과의 협의절차 등 목적요건 및 절차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제정되어 절차요건이 강화된다면 현재까지 훈령에 근거한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해외파견에 비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신중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이미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나, 해외파견에 대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입법취지, 규율내용 등에서 양 해외파견 간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 제정의 경제성과 정부 부처별 공동소관 법률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없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정안에서 달성하려는 입법취지는 일정 부분 달성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공동소관 법률(예시)]

구분	소관 부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방부,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경찰청, 법무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 해양수산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둘째, 제정안에 따라 수행되는 해외파견활동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외에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해외파견활동 보다 상대적으로 해외파견활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로 인해 동 제정안을 근거로 예산지출 및 국내 전투인력의 축소¹⁾를 초래하는 국군의 해외파견 요청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은 해외 파견 단위로 ‘국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7조에서는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국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방부도 부대단위의 파견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 제60조제2항에서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군’은 부대 단위 및 개인단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법률(제정안)에서 개인단위(개별 파견요원) 파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위헌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헌법 제60조제2항의 국회 동의권의 취지는 선전포고,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통

1) 파견부대 2025년도 예산규모 및 파견인원(파견연장 동의안 기준)

구분	2025년도 예산	파견인원
한빛부대	229억원	300명
동명부대	254억원	300명
아크부대	107억원	150명
청해부대	376억원	320명

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대단위의 파견만 이에 해당되고 개인 단위의 파견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헌법조문의 취지라는 의견도 있는 점과 유사입법례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2)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평화유지활동 참여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헌법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UN PKO 外 국군부대의 파견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개별요원 파견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유사법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과의 입법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요원 파견 절차에 대한 정부의 재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

- 제정안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활동 등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해외파견활동의 기본원칙(안 제3조) 등 14개 조문의 본칙과 시행일 등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규정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과 체계 및 구성 등에 있어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제정안의 체계 및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추가내용(개별 파견요원의 해외파견) 및 미규정 내용(상비부대의 설치·운영, 교육 및 훈련, 수당 등의 지급 등)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이하 개별 조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 조문 구성 비교]

구분	제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제3조	해외파견활동의 기본원칙	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군의 해외파견의 결정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6조	국군 해외파견의 국회 동의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7조	개별 파견요원의 해외파견	
제8조	국군의 파견 협의 등	국군부대의 파견
제9조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기간의 연장
제10조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	파견의 종료
제11조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요구	파견의 종료 요구
제12조	국회에의 활동 보고	국회에의 보고 등
		교육 및 훈련
제13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수당 등의 지급
제14조	사고예방대책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물자협력
		기념사업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 참고로, 동 법안은 제19대국회 및 제20대국회에서도 발의³⁾되었으며, 제19대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⁴⁾되었고, 제20대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⁵⁾됨.

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1905300호,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2013.6.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제2001804호, 김영우의원 대표발의, 2016.8.25.)

4) 제정안 내용 중 다국적군참여, 교육훈련 부분이 헌법과 불합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제2소위로 회부 후 논의 중 임기만료폐기됨.

5) 다국적군 파견이 평화유지 활동 범위를 벗어나 위험성 소지가 있고, 매년 다국적군 파견시 매년 국회 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별도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 ☐ 제정안은 제명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명: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헌법 제60조⁶⁾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과 제정안에 따른 다국적군·국방교류협력 파견이 있음.
- ☐ 제정안의 제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국군’ 및 ‘해외파견활동’은 위 두가지 해외파견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자칫 제정안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될 소지가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안의 제명을 ‘국군의 다국적군 및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으로 파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명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정의(안 제2조제1호)

-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해외파견활동’을 ① 국군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②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③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파견활동”이란 국군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정안에서 해외파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중, ① 국군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②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은 각각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및 ‘해당 국가의 요청’ 등 해외파견의 계기가 명확하여 해외파견의 필요성 및 범위 등을 판단하기 용이함.

- 다만, ③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평화유지’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해외파견의 계기로 표현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해외파견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해외파견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⁷⁾.

7) 수정안 예시: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 국군 해외파견의 국회 동의(안 제6조)

- ☐ 제정안 제6조에서는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동의안에는 조사활동 보고서, 파견 필요성·지역·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국군 해외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는 제5조의 절차를 거쳐서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동의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의 필요성 3. 파견 지역 4. 파견되는 국군의 임무 5. 파견되는 국군의 규모 6. 파견의 기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정안 제6조에서는 국군을 해외파견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60조의 내용을 재차 규정하면서 국회에 제출되는 파견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 ☐ 제정안에 따른 파견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입법례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⁸⁾의 파견동의

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안과 대부분 동일하나, 동 법에 포함되어 있는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제정안에서는 누락되어 있음.

□ 제정안 제5조제2항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군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바, 파견부대의 안전은 국군의 해외파견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서도 파견의 동의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 파견부대의 안전성 확보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정안에서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국회에 제출되는 파견동의안에 파견부대의 안전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제정안 제5조(국군의 해외파견의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개별 파견요원의 해외파견(안 제7조)

- 제정안 제7조제1항에서는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에 대하여는 ① 파견 예정지역이나 임무가 전투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임무 수행 중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③ 국가의 외교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개별 파견요원의 해외파견) ①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견 예정지역이나 임무가 전투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임무 수행 중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외교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부는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예정지역이나 임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예정지역이나 임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파견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동의안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파견동의안 처리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 정부는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현황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별 파견요원은 제정안 제2조제3호¹⁰⁾에 따르면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 또는 그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제정안 제7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개별 파견요원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전투행위 연계, 무력사용 가능성, 국가 외교안보 영향 등) 외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 제60조제2항에서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군’은 부대단위 및 개인단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법률(제정안)에서 개인단위(개별 파견요원) 파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위헌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헌법 제60조제2항의 국회 동의권의 취지는 선전포고,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대단위의 외국에의 파견만 이에 해당되고 개인단위의 파견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의 해당 헌법조문의 취지라는 의견도 있는 점과 유사입법례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¹¹⁾에서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평화유지활동 참여로

10)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별 파견요원”이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개인 단위로 활동하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또는 그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을 말한다.

1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군부대의 해외파견’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개별 파견요원에 대해서 특정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동 조문에 대해서는 위헌성 소지 문제와 유사입법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마. 파견기간의 연장(안 제9조)

- 제정안 제9조에서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해외파견활동 중인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연장 시에도 파견동의안의 국회제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9조(파견기간의 연장) 정부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파견활동 중인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정안 제9조는 최초 파견동의시와 동일하게 파견연장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은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새롭게 파견기간을 정해서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통제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제정안 제9조는 연장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5년 단위, 10년단위 파견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유사입법례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¹²⁾과 같이 파견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파견연장시 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충분한 심사기간

1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을 확보하고 국회 동의 후 파견준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과 같이 파견연장 동의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② 제1항에 따른 <u>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u>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u>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u>하여야 한다.

바.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안 제10조)

- ☐ 제정안 제10조에서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 파견임무 완수 등의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하고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하고 철수시켜야 한다. 1.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임무를 완수하는 등 더 이상 파견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는 경우

- ☐ 제정안 제10조에서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철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 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활동결과보고서는 향후 해외 파견의 필요성, 규모, 형태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며, 파견 요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파견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전체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작성토록 해야하고 이를 파견동의안을 심사하는 국회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유사입법례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

를」 제11조제2항과 같이 파견 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② 정부는 파견 종료 후 <u>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 한편, 제정안 제10조제3호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는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11조제2항에서 이미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제정안 제10조제3호는 중복 조문이 되므로 법조문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11조(해외파견활동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된 국군의 임무가 완수되거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견 지역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안보상 파견부대의 신속한 국내복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파견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u>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u>

사.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요구(안 제11조)

- 제정안 제11조에서는 파견된 국군의 임무가 완수되거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견 지역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안보상 파견부대의 신속한 국내복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해외파견활동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된 국군의 임무가 완수되거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견 지역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안보상 파견부대의 신속한 국내복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파견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정안 제11조제1항에서 국회가 해외파견활동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① 파견 지역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국가안보상 파견부대의 신속한 국내복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유사입법례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¹³⁾에서는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

1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무력분쟁 발생 등 파견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폭넓은 통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 열거한 무력분쟁 발생, 국가안보 등 외에도 외교문제 발생, 파견 지역에서의 전염병 창궐 등 다양한 파견종료 사유가 있는 점과 동일한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과 제정안 간의 국회의 통제권한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 불이익 처분의 금지(안 제13조)

- ☐ 제정안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군인에게 해외파견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군인에게 해외파견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정안에 따르는 군인의 해외파견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및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방위 및 국민보호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해외파견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조문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 다만, 동 조문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조문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나타남.
- ☐ 따라서 유사입법례와 같이 제정안 제13조에 따른 불이익 처우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유사입법례]

구분	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의견 건의)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u>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u> 제40조(고충 처리)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u>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u>
	제52조(벌칙) ②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u>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u>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u>불이익한 처우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u>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u>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직, 감봉, 전보 등 <u>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특별법	제3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u>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u>
-----	--

문 의 처

02)6788-5308

[참고자료]

1.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2. 한국군 해외파견 연혁
3. UN PKO와 다국적군 비교
4. 역대 국회 국군부대 해외파견 관련 입법현황

[참고자료 1]

1.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 총 14개국 989명

('25. 7. 24. 현재)

구 분				현재인원	지 역	최초 파병	교대주기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276	티르	'07. 7월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68	보르	'13. 3월	
	개인 단위	인·과 정전감시단(UNMOGIP)		5	이슬라마바드 등	'94. 11월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9	주바 등	'11. 7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07. 1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3	라운 등	'09. 7월	
		콜란고원임무단(UNDOF)		1	이스라엘	'23. 12월	
	소 계			566			
다국적군 PKO	부대 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264	소말리아해역	'09. 3월	6개월
	개인 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7	바레인	'08. 1월	1년
		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CTF-465)	참모장교	1	아덴만	'20. 3월	
		지부티 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1	지부티	'09. 3월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01. 11월	1년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15. 7월	1년
		쿠웨이트 다국적군지원사령부 (CJTf-OIR)	협조장교	2	아리프잔	'19. 12월	1년
		이라크 다국적군지원사령부 (CJTf-OIR)	참모장교	2	바그다드	'22. 8월	1년
	소 계			280			
국방교류 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43	아부다비	'11. 1월	8개월
	소 계			143			
총 계				989			

※ 개인단위(38명) : UN PKO(22), 다국적군(16)

※ 부대단위(951명) : UN PKO(544), 다국적군(264), 국방협력(143)

□ 용어

구 분	명 칭
인·파 정전감시단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Pakistan
남수단 임무단 (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s In Lebanon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MINURSO)	United Nations Miss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골란고원임무단 (UNDOF)	United Nations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연합합동기동부대-아프리카 뿔 (CJTF-HOA)	Combined Joint Task Force - Horn of Africa
연합해군사령부 예하 CTF-151	Combined Task Force 151
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예하 CTF-465	Combined Task Force 465
쿠웨이트/이라크 다국적군 지원사령부(CJTF-OIR)	Combined Joint TF-Operation Inherent Resolve (이라크/시리아 내 IS 격퇴 작전)

□ 파견 지역



《 개인파병 상세 현황 》

□ UN PKO 개인파견

-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UNMOGIP) 참여
 -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독립 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북부 국경 지역인 카슈미르 일대를 상호 점령하면서 교전이 발생하여 UN 개입 및 중재, '49년에 UN 임무단 창설
 - '94. 11월 최초 파병, 현재 5명(옵서버) 임무수행
 - ※ 책임지역 내 정찰 및 감시활동, 정전협정 준수상태 감독
- 레바논 임무단 (UNIFIL) 참여
 - '78년 레바논 내전 수습 명분으로 시리아군,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주둔과 기독교 민병대·이슬람 민병대·레바논 정부군 가세로 내전이 심화되어 UN 임무단 창설
 - '07. 1월 최초 파병, 현재 4명(참모) 임무수행
 - ※ 정보, 기획, 연락 등의 참모업무 수행 및 동명부대 지원
- 서부사하라 임무단 (MINURSO) 참여
 - '76년 스페인 군 철수 후 모로코가 서부사하라 지역을 점령하자 무장 독립투쟁이 지속됨에 따라 '91년에 UN 임무단 창설
 - '09. 7월 최초 파병, 현재 3명(옵서버) 임무수행
 - ※ 선거활동 감시/감독, 정찰 및 감시활동, 정전협정 준수상태 감독
- 남수단 임무단 (UNMISS) 참여
 - '11. 7월 수단으로부터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여 분쟁감시와 남수단 재건지원을 위해 UN 임무단 창설
 - '11. 7월 수단 임무단이 남수단 임무단으로 전환하여 현재 9명(참모 6, 옵서버 3) 임무수행
 - ※ 공병, 군수, 수송, 항공 등의 참모업무와 분쟁감시 및 연락업무 수행

○ 골란고원임무단 (UNDOF) 참여

- 골란고원 임무단으로 불리우는 유엔 교전중지 관찰부대(UNDOF)로 욤키푸르 전쟁 이후 골란고원을 사이에 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교전 중지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1974년 창설된 부대
- 현재 1명(옵서버) 임무수행

□ 다국적군 개인파견

○ 연합해군사 (CMF)¹⁴⁾ 참모장교 (바레인)

- '08. 1월 韓 마부노號 피랍 및 '09. 3월 청해부대 파병시 파견
- 파병인원 : 참모장교 7명 (중령 1, 소령 6)

※ 연합해군사령부 참모, 연합 작전계획 수립, 청해부대 교대 지원 등

○ CJTF-HOA¹⁵⁾ 협조장교 (지부티)

- '09. 3월 청해부대 파병시 파견
- 파병인원 : 협조장교 1명 (소령)

※ 청해부대 전투근무지원 등 제반 업무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업무 등

○ 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참모장교 (아덴만)

- '20. 3월부터 파견
- 파병인원 : 협조장교 1명 (소령)

※ 민군작전 관련 참모 임무, 정·첩보 수집 등

14) CMF : Combined Maritime Forces (아덴만과 소말리아 동부 해상에서 대해적작전을 수행하는 다국적군 부대)

15) CJTF-HOA : Combined Joint Task Force-Horn Of Africa (연합합동군-아프리카의 뿔)

- 美 중부사 협조단 (미국 플로리다 탬파)
 - 美 9.11 테러 이후 '01. 11월 美 합참 요청에 따라 파견
 - 파병인원 (2명) : 단장(대령 1), 협조장교(중령 1)
 - ※ 한국군 파병 관련 부대 전개, 교대 및 기타활동 등 중부사 협조
 - ※ 미 중부사 AOR (책임지역, Area Of Responsibility)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총 20개국

- 美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독일)
 - 해외파병부대(남수단 한빛부대)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유기적인 작전협조체계 구축
 - 파병 인원(1명) : 협조장교(중령)
 - ※ 상황 발생 시 아프리카에 파병된 남수단 한빛부대, 개인 파병 인원 (남수단, 서부사하라) 직·간접 지원

- CJTF-OIR 협조장교 (이라크, 쿠웨이트)
 - CENTCOM(Central Command) 지휘 아래 대 ISIS 작전을 수행 하는 임무단
 - 파병인원 : 참모장교 4명 (중령 1, 소령 2, 대위 1)
 - ※ 정보환경평가계획 수립, 지휘통합통제 자문관 등

[참고자료 2]

2. 한국군 해외파견 연혁

○ UN PKO 파병

파견부대	기 간	활 동(비고)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공병)	'93.7 ~ '94.3	- UN PKO 활동에 필요한 방호·전기시설·도로 등 건설 -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학교 및 기술학교 운영
서부사하라 의료감시단	'94.8 ~ '06.5	- UN PKO 요원 의료 및 위생 지원 - 지역주민 방역, 전염병 예방
앙골라 공병대대	'95.10 ~ '96.12	UN PKO 활동에 필요한 교량·건설 및 보수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99.10 ~ '03.10	- 현지 치안확보 및 인도적 구호활동 지원(최초 보병부대) * 다국적군에 참여('99.10) 치안회복 후 2000년 2월 부터 유엔 PKO로 전환
레바논 동명부대	'07.7 ~ 현재	- 레바논과 이스라엘간 정전감시 - 인도적 지원(의료지원, 직업교육 등)
아이티 단비부대	'10.2 ~ '12.12	지진피해 복구 및 재건지원
남수단 한빛부대	'13.3 ~ 현재	- 남수단(종글레이주) 재건 지원 - 인도주의적 활동 및 친한화 활동

○ 다국적군 PKO 파병

파견부대	기 간	활 동(비고)
월남전 (비둘기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십자 성부대, 백구부대, 은마부 대 태권도 교관단)	'64.9 ~ '73.3	월남전 전투 및 전투근무지원(경비·공병·수송 등), 의료진 및 태권도 교관 지원
걸프전 의료지원단	'91.1 ~ '91.4	다국적군 의료지원
걸프전 공군수송단	'91.2 ~ '91.4	다국적군 항공운송 지원
아프간 해성부대	'01.12 ~ '03.9	대테러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병력·장비·물자의 해상수송
아프간 청마부대	'01.12 ~ '03.12	대테러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병력·장비·물자의 항공수송

파견부대	기 간	활 동(비고)
아프간 동의부대	'02. 2 ~ '07. 12	· 동맹군/현지주민 의료지원
아프간 다산부대	'03. 3 ~ '04. 4	· 동맹군 기지운영 지원, 인도적 대민지원
이라크 서희부대	'03. 4 ~ '04. 4	· 동맹군 기지운영 지원, 인도적 대민지원
이라크 제마부대	'03. 4 ~ '04. 4	· 동맹군/현지주민 의료지원
이라크 자이툰부대	'04. 4 ~ '08. 12	· 책임지역의 평화정착 및 재건 지원 * 자이툰 병원 운영, 학교 및 도로건설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
이라크 다이만부대	'04. 10 ~ '08. 12	· 이라크 지원을 위한 병력·장비·물자의 항공수송
소말리아 청해부대	'09. 3 ~ 현재	·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 동참
아프간 오쉬노부대	'10. 6 ~ '14. 6	· 한국 PRT(지방재건팀) 주둔지 및 활동 보호

○ 국방협력 파병

파견부대	기 간	활 동(비고)
UAE 아크부대	'11. 1 ~ 현재	· UAE군 교육훈련 및 연합훈련
필리핀 아라우부대	'13. 12 ~ '14. 12	·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지원 및 인도적 지원

[참고자료 3]

3. UN PKO와 다국적군의 비교

구 분	국제연합 PKO * Peace Keeping Operation	다국적군(MNF) 활동 * Multi-National Force
개념	UN(안보리) 임무지시(mandate)에 의거 UN이 직접 주도 * UN사무총장 책임(UN DPO에서 보좌)	UN(안보리) 임무지시(mandate)에 의거 또는 명분을 가지고 특정국가 또는 지역기구 주도 * 핵심이해당사국 주도로 창설 결정하되 안보리 결의로 승인받는 것이 관례
구성 근거	UN PKO 임무단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	핵심 이해당사국의 주도하에 다국적군 창설이 결정되나, 안보리 결의로 승인 받는 것이 관례
	당사국 동의 필요 * 안보리에 임무설치 요청	당사국 동의 필요 * 침략국의 동의는 불필요 (예, 걸프전)
임무	적대행위가 종료된 지역에 정전 감시, 평화협정 이행감시, 전후 복구 등 임 무 수행 * 접수국 동의 필요 * 다국적군 창설을 주도하려는 국가 가 없을 경우 적대행위 위협성이 있 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 하는 경우가 있음. (robust peacekeeping)	침략행위 발생 또는 평화가 교란된 지역에서 평화 회복 임무 수행(peace enforcement) * 접수국 동의 불필요 * 평화가 회복된 지역이라도 뜻있는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다국 적군 파병하는 경우도 빈번
유엔통제 장치	유엔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며, 안보리의 지침을 받아 작전 지휘권 행사	- 병력 공여국들이 자체 통제 체계수립 - 안보리는 임무범위 및 기한 재검토 기능을 통해 형식적 통제
지휘통제	UN안보리/사무총장(DPO) → UN PKO 임무단(UN특별대표→PKO사령부)	다국적군 주도국/지역기구 → 다국적군 사령부
무력사용 범위	자위목적으로만 무력사용	침략격퇴, 무력진압 등을 위한 적극적 무력 사용 가능
경비부담	UN 책임 * 병력공여국 선집행, UN 사후 경비보전	지역기구 / 해당국 책임
한국군 참여사례	• PKO : 아이티 단비부대: '02.2~'02.12 - 레바논 동명부대: '07.7. ~ 현재, - 남수단 한빛부대: '13.3. ~ 현재 • 정전감시단 : 인·과, 그루지아 • 지원단 : 라이베리아, 아프간, 수단, 네팔 • 참모 : UNIFIL * 이라크, 아프간 경우에 비해 특정 위협 사항은 없으나, 분쟁 당사자간 갈등 속에서 우발적/불특정 위협 상존	• 동티모르: '99~'03 • 아프간 동의·다산부대: '02. 2~'07. 12 • 이라크 자이툰부대(659): '04. 4 ~ '08.12 • 소말리아 청해부대: '09. 3~현재 • 바레인 연합해군사: '09. 3~현재 • 아프간 오쉬노부대: '10. 6~'14. 6 * 아프간, 이라크 경우 대테러전 참여하 에서 평화건설 활동에 치중

[참고자료 4]

4. 역대 국회 국군부대 해외파견 관련 입법현황

소관 위원회	발의 날짜	법안명	발의자	주요 내용	처리결과
국방위원회	2008-07-0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	송민순 의원 등 25인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결의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참여를 위한 국군상비부대를 설치	제278회국회(정 기회)상정(2008-1 1-26), 201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2008-07-10	국군부대의 국 제평화유지 활 동 참여에 관 한 법률안	송영선 의원 등 11인	(UN) 평화유지활동(PKO), 혹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합의 혹은 승인된 국제적·다국적 평화유지활동의 파견 근거 마련 PKO, 다국적군, 해외파견요원 (군인, 경찰, 민간인 포함)	제278회 국회(정기회) 상정(2008-09-17) 2009-12-02 철회
국방위원회	2009-09-22	국군부대의 해 외파견 절차 에 관한 법률 안	김장수 의원 등 17인	국군부대 해외 파견의 경우, 이 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관 련사항을 명확히 규정 PKO, 다국적군, 해외파견요원 (군인, 군무원 한정)	미상정 2012-05-29 임기만료폐기
국방위원회	2009-12-02	국군부대의 해 외파견절차에 관한 법률안	송영선 의원 등 10인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와 관 련사항을 규정 PKO, 다국적군, 해외파견요원 (군인, 경찰, 민간인 포함)	미상정 201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2009-04-08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파 견절차법안	송민순 의원 등 24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나 총 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연 합의 재정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유지활동에 한정 국군 부 대 파견 근거 마련	제285회 제1차 본회의 의결 (2009-12-29) 국제연합 평화유 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대안) 통과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2008-12-01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안	김무성 의원 등 15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 의에 의거하여 군 부대와 기타 요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2011-07-15	국제연합 평 화 유 지 활 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서종표 의원 등 12인	다국적군 파견에 관한 사항 함께 규정, 개인 단위 파견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매년 정기국회에 활동상황 보고	미상정 2012-05-29 임기만료폐기
국방위원회	2013-06-04	국군의 해외파 견활동 참여 에 관한 법률	송영근 의원 등 20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다국적군, 국방교 류협력 등)의 파견 절차 및 관 련사항을 규정	제321회 국회(임시회) 상정(2013-12-23) 2016-05-29 임기만료폐기
국방위원회	2016-08-25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 의원 등 11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다국적군, 국방교 류협력 등)의 파견 절차 및 관 련사항을 규정	제346회 국회(정기회) 상정(2016-11-08) 2020-05-29 임기만료폐기